1-3	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 연장	기후부장관

□ 권고 내용

○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은 상당수 환경피해의 경우 그것이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**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**하기 바랍니다.

※ 소관 변경 : 법무부 → 환경부(법무부, 소관부처 변경 요청, '22.9)

□ 이행 현황

○ 「화학제품안전법」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케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(안) 마련 및 법무부* 합의 완료(5차 협의 진행 → '25.11.17 합의)

* (법무부 의견) 과실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는 입법례가 없는 특수사항으로서 (고의적범죄도 사례가 제한적),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특례범위는 엄격히 접근할 필요

○ **공소시효 연장(안)을 포함하는 「화학제품안전법」 일부개정안 입법추진(허종식의원 대표발의, '26.3)**

< 공소시효 연장(안) 주요내용 >

○ 법령위반과 피해간 **인과관계**를 **증명**할 수 있는 **과학적 증거**가 있는 경우 현행 공소시효에 **+10년 연장**(기존 7·10년 → 연장 시 17·20년)

벌칙		공소시효	
조항	내용	현행	연장(안)
제56조제3항	**未신고·승인 제품** 등으로 사상케 한 경우(징역 10년↓)	10년	**20년**
제57조제3항	**변경신고·승인 미이행** 등으로 사상케 한 경우(징역 7년↓)	7년	**17년**

○ 과학적 증거는 유사판례에서 인과관계를 확정하는데 요구되었던 △**역학조사** 및 △**독성연구결과**(동물실험 등)를 **모두 갖춘 경우**로 하고,

- 조사·연구의 증명력 보장을 위해, **기후부(전문가 포함)**의 **수행결과**로 **한정**

□ 향후 계획

○ 국회 입법과정 대응 등